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57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강정목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김성진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증여금액란 기재 해당 증여금액에 대하여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65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4. 1. C에게 424,5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C은 2012. 3. 1.부터 위 채무를 연체하였다.

나. A(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지방법원 2014차308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1. ‘C은 원고에게 460,448,537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4. 7. 28. C에게 송달되어 2014. 8. 12. 확정되었다.

다. C은 별지 2 목록 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C의 해당 계좌에서 피고의 해당 계좌로 송금(순번 0, 5 내지 11, 14, 15)하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에 입금(순번 1 내지 4, 12, 13)하는 방식으로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1 목록1) 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증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11, 14, 15 기재 내역은 피고가 C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청약을 하면서 피고의 돈으로 청약증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납입하였는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청약신청자인 C의 계좌로 청약증거금을 반환하는 바람에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11, 14, 15 기재와 같이 C 해당 계좌에서 피고의 해당 계좌로 다시 청약증거금 상당을 이체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납부한 자신의 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반환받은 것일 뿐이고 C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12, 13 기재 내역은 피고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분양권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C이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C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나.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19. 8. 21.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나아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년경 부실채무자에 대한 특별재산조사를 한 결과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수차례 걸쳐 금전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7. 4.경 A의 파산관재인 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1)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11, 14, 15 기재 부분

가) C이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11, 14, 15 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C의 해당 계좌에서 피고의 해당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납부한 청약증거금을 C의 계좌로 반환받게 되자,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11, 14, 15 기재와 같이 C의 해당 계좌에서 피고의 해당 계좌로 청약증거금 상당을 이체받아 피고의 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별지 2 목록 순번 5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증거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6. 23.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C의 제1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15. 6. 24. 별지 2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피고의 제1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별지 2 목록 순번 6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7.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증거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7. 17. C의 제1계좌로 1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순번 6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피고의 제2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3) 별지 2 목록 순번 7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7.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증거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7. 22. C의 제1계좌로 1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15. 7. 23. 별지 2 목록 순번 7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제2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4) 별지 2 목록 순번 8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8.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증거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8. 13. C의 제1계좌로 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순번 8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이하 ‘피고의 제3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5) 별지 2 목록 순번 9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9.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증거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9. 22. C의 제1계좌로 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순번 9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K, 이하 ‘피고의 제4계좌’라 한다)로 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6) 별지 2 목록 순번 10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1.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증거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2. 2. C의 제1계좌로 1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순번 10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제2계좌로 1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7)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2. 2. 한국수자원공사에 청약증거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 12. 9. C의 제1계좌로 4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제3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8) 별지 2 목록 순번 14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3.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증거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3. 18. C의 제1계좌로 1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순번 14 기재와 같이 C의 제1계좌에서 피고의 제3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9) 별지 2 목록 순번 15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9. 14. 주식회사 L에 청약증거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L는 2017. 9. 18.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이하 ‘C의 제2계좌’라 한다)로 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순번 15 기재와 같이 C의 제2계좌에서 피고의 제1계좌로 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12, 13 기재 부분

가)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19호증, 이 법원의 N조합, 주식회사 F은행, O조합 범어지점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15. 3. 31. 별지 2 목록 순번 1, ②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제1계좌에 현금 11,700,000원, P이 N조합에서 발급받은 자기앞수표 10,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② C이 2015. 4. 22. 별지 2 목록 순번 3, ④ 기재와 같이 피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Q, 이하 ‘피고의 제5계좌’라 한다)에 현금 2,000,000원, R가 F은행 기찰지점에서 발급받은 자기앞수표 31,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③ C이 2015. 12. 9. 별지 2 목록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제1계좌에 현금 3,805,240원, S이 T조합 토월지점에서 발급받은 자기앞수표 19,3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P, R, S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 R, S은 피고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각 지급하였고, C은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앞수표를 별지 2 목록 순번 2, 4, 13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제1, 5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 C은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각 입금하면서 그와 동시에 별지 2 목록 순번 1, 3, 12 기재 해당 현금도 피고의 제1, 5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C은 피고가 분양권을 매도하여 취득한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12, 13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제1, 5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정경희, 판사 송지현

별지1

소외 [] 의 피고에 대한 증여내역

순번	일자	증여금액(원)
1	2015. 3. 31. ¹⁾	11,700,000원 중 일부인 550,000
2	2015. 3. 31.	10,000,000
3	2015. 4. 22.	2,000,000
4	2015. 4. 22.	31,000,000
5	2015. 6. 24.	10,000,000
6	2015. 7. 17.	10,000,000
7	2015. 7. 23.	10,000,000
8	2015. 8. 13.	50,000,000
9	2015. 9. 22.	5,000,000
10	2015. 12. 2.	15,000,000
11	2015. 12. 9.	40,000,000
12	2015. 12. 9.	3,805,240
13	2015. 12. 9.	19,300,000
14	2016. 3. 18.	10,000,000
15	2017. 9. 18.	5,000,000
합계		221,655,240

(별지2) [] 계좌에서 [] (처)계좌로의 자금이체 내역					
순번	일자	출금계좌 []	입금계좌 ([])	금 액	
0	2015.03.13	[] 사적통 []	[]	10,000,000	
1	2015.03.31	[] 현금입금 (입금자 : [])		11,700,000	
2	2015.03.31	[] 자기앞수표입금 (입금자 : [])		10,000,000	
3	2015.04.22	[] 현금입금 (입금자 : [])		2,000,000	
4	2015.04.22	[] 자기앞수표 입금(입금자 : [])		31,000,000	
5	2015.06.24	[]		10,000,000	
6	2015.07.17			10,000,000	
7	2015.07.23			10,000,000	
8	2015.08.13			[] 사적통 []	50,000,000
9	2015.09.22			5,000,000	
10	2015.12.02			15,000,000	
11	2015.12.09			40,000,000	
12	2015.12.09	[] 현금입금 (입금자 : [])		3,805,240	
13	2015.12.09	[] 자기앞수표 입금(입금자 : [])		19,300,000	
14	2016.03.18	[] 사적통 []		10,000,000	
15	2017.09.18	[] 영산 []		5,000,000	
소 계		16 건		243,805,240	

1) C이 피고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7. 9. 15.까지 8회에 걸쳐 C에게 합계 21,150,000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을 별지 2 목록 순번 0 기재 금액 10,000,000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11,150,000원(= 21,150,000원 - 10,000,000원)을 순번 1 기재 금액 11,700,000원에 충당하면, 순번 1 기재 금액은 500,000원이 남는다. 이에 따라 별지 2 목록 자금이체 내역 중 위와 같이 피고가 반환하여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을 정리한 것이 별지 1 목록 증여내역이다.